# 심사보고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2

2023. 4. 28.(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20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 가. 제안이유

-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 1. 16일자로 설립되었고, 2009.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772억 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사업을

계획·검토 중에 있으나, 새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26년 325.2% 예상)

○ 또한,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 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자 계획(안)

구 분	2023년	2024년
현금 출자액	300억원	200억원

※ 출자 총액 : 180,175,900천원(기출자 : 130,175,900천원)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출자의 필요성

- 충북개발공사의 출자자본금 규모는 '21년 결산 기준 1,302억원으로 15 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중 15로 가장 적은 규모임
  - \* 도 평균 : 4362억원
- O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 재정운영의 자율책임성과 채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의 차입한도를 순자산의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23년 기준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자본규모 3,338억원 대비 156.5%인 5,223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채비율 200%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 앞으로 추진 예정인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진천 혁신 산단, 오창 나노 산단, 음성 감곡역세권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경우 부채비율은 '26년 도에 최대 32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넥스트폴리사산단 규모 조정, 오창 나노산단 SPC 전환과 경영효율화 제고 등 자구노력을 통해 '26 년 기준 부채비율을 326%에서 181%로 부채비율 144% 감축하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 도비 500억원 반영시 '26년 최고 부채비율 182.6%

#### 4. 검토의견

-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도비 300억원을 금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지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북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공사채와 신규 사업의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인 대규모 국책사업과 산업 단지 등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생략"

-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등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

의 안 번 호 252-1 제출연월일: 2023년 4월 17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 1. 16일자에 설립되었고, 2009.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772억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 사업을 계획·검토 중에 있으나, 새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26년 325.2% 예상).
- 또한,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 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자 계획(안)

구 분	2023년	2024년
현금 출자액	300억 원	200억 원

※ 출자 총액 : 180,175,900천원 (기출자 : 130,175,900천원)

3. 의안전문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

### I

### 추진 배경

### □ 출자 필요성

- ㅇ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 관리 필요
  -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선정,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 \* 부채규모 1천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21년 공사 부채 4,030억원)
  - 출자 규모 최하위로 사업추진에 한계, 부채비율 지속 상승 예상
- ㅇ 도 정책사업 추진 등 공사의 역할 확대로 건전한 재무기반 마련 필요
  - 오송 제3국가산단 등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재무적 여력 확보
  -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출자 필요

### [2] **공사 자본금 현황**(2021년말)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u>:</u>	출 자 금	이익잉여금 (~'21)	비	닌	
		계	설립('06. 1)	1차('09. 3)	(~'21)	<u> Ч</u>	ᅶ
합 계	3,006	1,302	530	772	1,704		
현 금	1,908	204	204	-	1,704		
현 물	1,098	1,098	326	772	-		

- \* 타 시·도 15개 도시개발공사와 비교 : **자본금 13위, 출자금 15위**
- \* 부채비율 : '21년 결산 기준 134.1%, **'26년 325.2%까지 상승 예상**

### Ⅱ 출자 계획(안)

-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
  - \* [규모 축소]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 [추진방식 변경(SPC)] 오창 나노 산단
-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정도로 관리기준 내에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함
  - \* [투자 계획] 향후 3년간('24~'26년) 1,000억원 규모의 사업 발굴 및 추진(검토사업 3곳 미정)

#### < 사업조정 및 출자 효과분석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 H	부채총계	5,223	7,524	11,736	13,510	12,612
기본 현황	자본규모	3,338	3,720	3,985	4,154	4,375
123	부채비율	156.5%	202.3%	294.5%	325.2%	288.3%
<ul><li>● 넥스트폴리스 산단 규모 조정 시 부채</li></ul>		5,223	6,134	8,635	9,986	8,878
	부채비율	156.5%	164.9%	216.7%	240.4%	202.9%
	나노 산단 전환 시 부채	5,223	5,716	7,172	7,526	6,836
	부채비율	156.5%	153.7%	180.0%	181.2%	156.3%
<b>③</b> 신사	업 추진 시 부채	5,223	6,016	7,772	8,526	7,836
	부채비율	156.5%	161.7%	195.0%	205.2%	179.1%
4 출자	시 자본	3,638	4,220	4,485	4,654	4,875
	부채비율	143.6%	142.6%	173.3%	183.2%	160.7%

□ 향후 신사업 분야 확대 및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500억원 출자 필요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3년 300억원, '24년 200억원 출자

### 불임 1 시·도 개발공사(15개) 자본금 및 재무현황(2021년 결산 기준)

(단위 : 명, 억원)

		7J 6J	<b>ネ</b> カ		결과			
기 관 명	설립	정원 (현원)	출 자 자본금	자산	자본	부채	부채 비율	당 기 순이익
SH공사(서울)	1989	1,386 (1,359)	71,195	271,481	95,140	176,341	185%	1,398
부산도시공사	1991	306 (291)	6,205	29,614	19,248	10,366	54%	94
대구도시공사	1988	169 (168)	2,723	19,533	6,946	12,256	177%	370
인천도시공사	2003	417 (419)	25,110	88,030	28,905	59,125	205%	3,036
광주도시공사	1993	294 (285)	1,952	10,944	4,445	6,499	146%	179
대전도시공사	1993	948 (902)	2,309	10,488	4,543	5,945	131%	263
울산도시공사	2007	60 (61)	1,400	5,675	2,807	2,868	102%	(112)
GH공사(경기)	1997	713 (668)	17,311	106,775	46,408	60,367	130%	3,572
강원개발공사	1997	117 (113)	3,365	13,875	1,214	12,661	1,043%	(1,691)
충북개발공사	2006	86 (85)	1,302	7,036	3,006	4,030	134.1%	123
충남개발공사	2007	99 (96)	3,425	10,016	5,597	4,419	79%	598
전북개발공사	1998	94 (91)	1,374	7,194	3,401	3,793	112%	37
전남개발공사	2004	136 (128)	3,907	10,633	6,936	3,697	53%	391
경북개발공사	1997	130 (127)	2,834	10,858	8,372	2,486	30%	236
경남개발공사	1997	102 (95)	1,379	11,158	4,569	6,590	144%	(28)

※ 15개 시·도 평균 출자 자본금 : 9,719억원(시 평균 1조 5,842억원 / 도 평균 4,362억원)

# 붙임 2 충북개발공사 세부 출자현황

(단위 : 건, 천m², 백만원)

구 분		출자 총액				시초 출 년 설립		Ť	비고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H114
계		235	497	130,176	136	163	52,966	99	334	77,210	
	현 금			20,359			20,359			0	
	소 계	235	497	109,817	136	163	32,607	99	334	77,210	
	밀레니엄 타운 부지	146	435	92,054	47	101	14,844		334 건물등	76,947 263	일부 매각
	가경지구 (미분양용지)	2	4	4,535	2	4	4,535	-	-	-	매각 완료
현 물	부용산단 (미분양용지)	2	10	928	2	10	928	-	-	-	매각 완료
	증평지구 (미분양용지)	5	4	1,038	5	4	1,038	-	-	-	매각 완료
	가경지구 (연부 <del>용</del> 지)	5	19	8,896	5	19	8,896	-	-	-	매각 완료
	증평지구 (연부용지)	75	25	2,366	75	25	2,366	-	-	-	매각 완료

## 붙임 3 주요 추진사업 현황(자체사업 기준)

	구 분	사업 면적	사업비	미상환 공사채		공사치	바 발행	예정(	억원)		비고
	l L	전역 (천㎡)	(억원)	(억원)	소계	'23	<b>'24</b>	<b>'25</b>	<b>'26</b>	'27	7135
	청주 밀레니엄타운	637	2,952	300	-	-	-	-	-	-	2016~2028
	제천 3산단	1,092	1,241	250	-	-	-	-	-	-	2015~2023
	동충주 산단	1,405	2,151	300	-	-	-	-	-	-	2014~2023
     진	음성 인곡산단	1,730	3,450	864	900	900	-	-	-	-	2017~2024
행 사	청주 북이산단	1,012	2,605	500	1,150	600	550	-	-	-	2018~2026
업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단	1,724	10,418	-	5,900	-	1,200	3,000	1,400	300	2019~2028
	진천 혁신산단	1,344	3,242	-	2,250	-	900	1,000	350	-	2020~2027
	청주 오창 나노산단	1,504	2,950	-	2,370	-	400	1,000	970	-	2020~2028
	음성 감곡 역세권	239	926	-	380	-	100	200	80	-	2020~2027
	소계	10,687	29,935	2,214	12,950	1,500	3,150	5,200	2,800	-	
검	제천 4산단	818	1,224	-	미정						-
점 토 사 업	오송 3산단	6,750	33,910	-	미정						-
업	에어로 3지구	1,290	2,329	-	미정						-
	소계	8,858	37,463	-	-						
	합계	19,545	67,398	2,214	12,950	1,500	3,150	5,200	2,800	-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